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99

발의연월일: 2024. 8. 9.

발 의 자:서영교·조인철・박지혜

김준형 · 황정아 · 이수진

이해식 · 한정애 · 조계원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,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인 천)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.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.

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(안 제32조),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. 전문의 수. 진료과목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(안 제33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중 "국가"를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"로, "실시한다"를 "실시하고,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"로 한다.

제3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2조(의료지원) <u>국가</u> 는 특수임	제32조(의료지원) <u>국가와 지방자</u>		
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치단체		
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			
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			
록 의료지원을 <u>실시한다.</u>			
	실시하고, 이 경우 각 지역별로		
	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		
	<u>노력하여야 한다</u> .		
제33조(진료) ① (생 략)	제33조(진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	②		
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			
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		
<u><</u> 후단 신설>	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,		
	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대통령		
	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		
	도록 위탁하여야 한다.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